안양자이 더 포레스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2052-018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3.11.02.)로부터 1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3.10.13.(금)	2026.11.11.(수)	2026.11.16.(월)	2026.11.19.(목)	2026.11.23.(월) [10:00~17:00, 점심시간 11:30~13:00 제외]	2026.11.26.(목) [10:00~16:00]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6.06.1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경우 비규제지역도 청약홈 대행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11.11.(수) 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88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0.13.(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300043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11.16.(월)	2026.11.19.(목)	2026.11.23.(월) [10:00~17:00, 점심시간 11:30~13:00 제외]	2026.11.26.(목) [10:00~16:00]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www.applyhome.co.kr	▪ 분양사무소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1F)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3.11.02.)**로부터 1**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 되었습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 38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5개동 총 483세대 일반분양 212세대 중 잔여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11월(2026.11.26.~2027.01.25. 기간 중 잔금 완납 시 즉시 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 ㎡,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288	01	059.9871A	59A	1	104	1104
	합 계			**1**	-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약식표기 (타입)	동 호	분양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59A	104동 1104호	273,080,000	409,620,000	682,700,000	68,270,000	614,43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비용 및 추가 선택품목[가구, 가전 등 유상옵션] 금액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기존 내용을 승계하는 내용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 내용에 대해 추가 또는 취소 등의 개별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입주)이 완료된 단지로 중도금은 없으며, 입주지정기간 내 잔금을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및 기타 등기내용 행정 절차 완료 시점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아파트의 후취담보대출을 승인하는 금융기관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의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으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 미납 시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연체료가 부과되며, 입주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공급 계약서 조건에 따라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해지될 경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게 귀속됩니다.

※ 당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공급 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잔금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26년 5월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금회 공급대상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의 변경(추가 및 취소)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의[별도 계약 품목]을 확인하시어 동호수별 발코니 확장 여부 및 플러스 옵션 현황을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기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변경 및 추가공사를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발코니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무상옵션) 세부 내역, 금액(선택 및 변경이 불가한 항목으로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임)** **(단위 : 원)**

약식표기 (타입)	동 호	품목	내용	금액	계약금(10%) 계약시	잔금(90%) 입주지정기간
59A	104-1104	발코니 확장		15,900,000	1,590,000	14,310,000
		계		15,900,000	1,590,000	14,310,000
		플러스 옵션	조명 스타일업	840,000	84,000	756,000
			욕실 스타일업	2,640,000	264,000	2,376,000
			붙박이장	1,280,000	128,000	1,152,000
			전동커튼레일	1,220,000	122,000	1,098,000
		계		5,980,000	598,000	5,382,000

※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의 경우 해당세대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플러스 옵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승인 이후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세대에는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플러스옵션, 유상옵션 계약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금액(분양대금)	하나은행	231-910046-37904	화창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발코니 확장	KB국민은행	006001-04-340932	지에스건설(주)
플러스옵션		006001-04-340945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4동 1104호 계약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104-1104홍길동'으로 기재)
- 현금 수납이 불가하오니 계약금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대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해당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잔금도 해당 세대 계좌와 동일하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대금,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계약금 10%, 잔금 90%로 나누어 납부하며, 잔금 90%는 실입주일 또는 키불출일 중 빠른 날짜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단, 잔금 납부 마감일 이후에는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연체료가 부과 됩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지정 계약일, 계약시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일, 계약시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의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4 청약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11.19.(목) ~ 2026.11.28.(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11.1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 제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모든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1.)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분양사무소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안양자이더포레스트'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전체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본 추가 제출 필요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3억원)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매허가결정서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제출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 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안양자이더포레스트'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공급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소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11.26.(목) (10:00~16:00) ※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개별통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 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일, 시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일시 : 추후 개별통보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일시 : 추후 개별통보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당첨자 계약체결 구비서류 참조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공통 서류		○	자격검증서류	-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용 / 2. 제출처: ''안양자이더포레스트로 설정하여 발급)
	○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로 제출자는 본인서명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전자수입인지 (사본)	-	•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구매 방법 및 금액 - 구매방법 :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구매금액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 씩 균등 부담(※세부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아파트 공급계약, 발코니확장계약,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에 따른 인지세 각각 별도 납부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	접수장소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사용가능(1. 발급용도 : '기타'선택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2. 제출처: '안양자이더포레스트'로 설정하여 발급)
	○		위임장	본인	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분양사무소 비치)
	○		신분증	대리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 불가(실물 지참 필수)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상기 모든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11.11.)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되며, 기 납부한 분양대금은 위약금(총분양대금의 10%)으로 귀속 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2023.01.01. 개정된「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형태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내용을 (2023.10.1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발표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 (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날로부터 7일)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체결이 취소됩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따라 위약금 [총 주택가격(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격 포함)의 10퍼센트]을 공제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20.2.21.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체 공동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재공급 대상 세대가 계약체결 이후라도 소송 등에 의해 최초 계약자의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당첨 및 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3.10.13.)를 통해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시행자)	시공사
상호명	화창지구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지에스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34171-0004191	110111-0002694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천로 159, 301호(석수동)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청진동, 그랑서울)

■ 분양사무소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 1F

■ 분양 문의 : **02-2052-0180 (평일 10:00~17:00, 주말, 공휴일 및 점심시간(11:30~13:00) 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xi.co.kr/YYH**